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맹사업의 요건 변경〉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79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24인
- (2) 제 안 일 : 2024. 10. 14.
- (3) 회 부 일 : 2024. 10.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가맹사업은 IT기술발전과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화, 서비스업의 발전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모색하고 있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과거의 전근대적 수직적 통제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지원과 관리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 정의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과 함께 “통제”를 가맹사업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점에서 가맹점사업자를 가맹본부의 통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요건인 “통제”를 이유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 거래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위 대가를 ‘가맹금’과 같은 금전만이 아니라 가맹본사가 공급하는 물품대금에 포함된 경제적 이익 등으로도 지급하고 있음. 가맹사업 실무에서는 ‘차액가맹금’이라는 명칭으로 가맹본사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포함된 경제적 이익 등도 ‘가맹금’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나, 어떤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도 함. 과거 화폐경제 사회에서 당사자간의 거래는 주로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 졌으나 현재의 발달된 IT기술이나 플랫폼 거래에서는 화폐이외에도 모바일상품권,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가맹금’을 가맹금을 포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요건 중 ①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통제’를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관리’로 변경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위치승인 등을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② ‘가맹금의 지급’을 ‘가맹금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 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 ·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 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 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 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 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 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 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 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1. ----- ----- ----- ----- ----- ----- ----- ----- ----- ----- <u>-교육과 관리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u> ----- ----- <u>-----포함한 경 제적 이익을 지급하는-</u> -----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 6. (생략)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 12. (생략)	-----. 가. 사업장에 대한 위치승인 나. 사업장의 일정한 설비와 외관 다. 운영시간 제한 라.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 마. 회계처리 지침 바. 인사관리 사. 고객관리 아. 가맹점 참여나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광고·판촉행사 자. 영업지역 설정 차. 그 밖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 6. (현행과 같음) 7. ----- ----- ----- ----- ----- ----- -----관리----- ----- -----. 8. ~ 12.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①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사용,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 판매,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④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규정하고 있음¹⁾.

○ 가맹사업은 일반 소비자들이 가맹본부의 상표 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모든 가맹점이 일정한 품질이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헌법재판소가 판시²⁾한 바와 같이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 및 통제’는 이러한 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³⁾에 반영되어 있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헌법재판소 2015헌마149](2015. 9. 24.)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영업전략과 기업문화에 맞는 일정한 지시와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내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점사업자 영업의 주된 부분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통제의 정도는 단순한 제의나 암시보다는 강하고 강압적 요구보다는 약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 및 통제**를 의미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9호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중 통제 관련 내용 >

다.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 (1)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도록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여야 한다.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는 다른 유통(거래)방식과 구별되는 가맹사업의 고유한 특성이다.
- (2) 가맹계약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의 설정 등 가맹사업의 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통제가 가맹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가맹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점사업자 영업의 주된 부분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통제의 정도는 단순한 제의나 암시보다는 강하고 강압적 요구보다는 약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 및 통제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5헌마149 결정)
- (4)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점포의 외관이나 인테리어, 정찰물·설비, 직원복장 등에 대한 기준 준수 요구, 품질기준, 영업시간, 판매방식, 고객응대요령, A/S 기준, 점포의 입지나 영업지역 등에 대한 제한은 상당한 수준의 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제, 보건·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법령 준수 요구 등은 상당한 수준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정안은 통제라는 용어를 관리로 변경하고,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임.

○ 현행법에서는 통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명시된 행위 중 일부만 충족되어도 가맹사업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맹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고 대리점거래 등 다른 유통 거래 방식과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정한 품질·영업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통제는 다른 유통 방식과 구별되는 가맹사업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점에서⁴⁾, 현행법 역시 이를 전제로 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맹본부는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각종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4) 타 유통 관련 법률들은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또한, 현행법령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거래 상대방의 구속, 상품·용역의 판매제한 등의 영업활동 제한을 허용하고 있음⁶⁾.

○ 참고로, 가맹사업과 관련한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통제를 가맹사업의 요건에 포함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서 상당한 통제에 해당하는 형태들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Franchise Rule 중 일부 발췌

- (h) Franchise means any continuing commercial relationship or arrangement, whatever it may be called, in which the terms of the offer or contract specify, or the franchise seller promises or represents, orally or in writing, that:
- (2) The franchisor will exert or has authority to exert a **significant degree of control** over the franchisee's method of operation, or provide significant assistance in the franchisee's method of operation; and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일부만 발췌)

2. 구속조건부 거래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Franchise Rule Compliance Guide 중 일부 발췌

The “Significant Control or Assistance” Element

(중략)

Further, to be deemed “significant,” the control or assistance must relate to the franchisee’s overall method of operation - not a small part of the franchisee’s business. Control or assistance involving the sale of a specific product that has, at most, a marginal effect on a franchisee’s method of operating the overall business will no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control or assistance is “significant.”

Significant types of control include:

- site approval for unestablished businesses;
- site design or appearance requirements;
- hours of operation;
- production techniques;
- accounting practices;
- personnel policies;
- promotional campaigns requiring franchisee participation or financial contribution;
- restrictions on customers; and
- locale or area of operation.

□ 한편,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요건 중 하나인 ‘가맹금의 지급’을 ‘가맹금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에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 정의하고 있는 등 이미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 따른 가맹금 및 가맹금 제외 유형>

구 분	가맹금 및 가맹금 제외 유형
가맹금 유형	<현행법 제2조제6호> -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에 대한 대가 - 상품대금에 관한 채무액, 손해배상액 지급 담보

구 분	가맹금 및 가맹금 제외 유형
	-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등 - 계약의 의해 허락받은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3조제2항> 1)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차액가맹금) -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금 범위에서 제외	<현행법> -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 <시행령 제3조제1항> 1) 신용카드 수수료 2) 상품권 수수료나 할인금 3)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수수료나 할인금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 등의 적정한 도매가격 5) 그 밖에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은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가맹점에 대한 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현행 가맹사업법상 여러 제도들이 가맹본부의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통제요건의 삭제·변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이 가맹금을 금전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가맹금 요건을 변경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